

파주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3
----------	-----

제출년월일 : 2000. 11. 3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파주시규제개혁위원회 제4차회의에서 심의·의결된 2000년도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장학금 지급정지의 사유를 행정규제정비차원에서 완화함으로써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제도를 개선해 나가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장학금 지급정지사유중 리장의 자격요건에 저촉되어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조항 삭제(안 제8조제1항제1호)

나. 장학금 지급정지사유중 확인이 불가능한 애매모호한 조항 삭제
(안 제8조제1항제4호)

다. 장학금 지급정지사유중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를 “장학생이 학사경고를 받을때”로 판단기준 구체화
(안 제8조제1항제3호)

파주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 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4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제3호중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때”를 “장학생이 학사경고를 받은경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총 무 과 ☎ 940-4126
입안자	총무과장	이 순 용
	시정담당	김 규 범
	담 당 자	양 성 원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지급의정지) ①(생략) 1.보호자인 통·리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때 2.(생략) 3.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4.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제8조(지급의정지) ①(현행과 같음) 1.(삭제) 2.(현행과 같음) 3.장학생이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 4.(삭제)